

2026년 8월 28일(금)

용인시보

차 례

● 자치법규 입법예고

- 용인시 공고 제2026-2494호 [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]

● 고 시

- 용인시 고시 제2026-484호 [남이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2호 지방소방학교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 작성 열람 공고]

● 공 고

- 용인시 공고 제2026-2492호 [도시계획시설(대학교1호 단국대학교) 공사완료]
- 용인시 공고 제2026-2501호 [주민의견 청취 공고[화곡천, 안악골천, 시미곡천 소하천 및 소하천구역 지정 변경 폐지 결정]]
-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-1001호 [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]

용인시공고 제2026-2494호

「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8일

용인시장

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가.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용인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
- 나. 용인시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용인시청소년포함하여 용인시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수 있도록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‘용인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 로 변경(안 제명)
- 나.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변경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1호·2호, 제5조)
- 다. 용인시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신설 (안 제5조)

3. 자치법규안 : 별첨

4. 예고기간: 2026. 8. 28. ~ 2026. 9. 7.

5. 의견제출

- 가. 제출기일: 2026년 9월 7일까지
- 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팩스·전자메일 등
- 다. 기재내용:
 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라. 제출기관: 용인시장(교육청소년과)
 - 주 소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, 용인시청 교육청소년과
 - 전 화: 031-6193-2267
 - 팩 스: 031-6193-4559
 - 전자메일: gkskdud@korea.kr

입법(행정)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(행정규칙)명: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제·개정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구 분: 일부개정

2. 개정이유

- 가.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용인시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
- 나. 용인시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을 용인시청소년이 포함하도록 하여 용인시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‘용인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’로 변경함(안 제명)
- 나.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
(안 제1조, 제3조, 제4조1호·2호, 제5조)
- 다. 용인시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 신설 (안 제5조)

4. 개정조례안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대비표: 덧붙임

6. 관계법령 발췌서: 덧붙임

7. 예산수반 사항: 해당 없음

8. 입법예고(2026. . . ~ . .) 결과 :

9. 부서협의 절차 이행 여부 : 실시예정

가.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:

나.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결과:

다.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:

라.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:

마. 성별영향평가 협의결과:

바. 관계부서 의견 조회여부:

사. 상급 기관 승인 여부(표준안 포함):

10. 기타 참고사항: 해당 없음

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를 “용인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청소년육성위원회”를 “청소년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“청소년육성위원회”를 “청소년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3조 중 “청소년육성에”를 “청소년정책에”로, “청소년육성위원회”를 “청소년정책위원회”로 한다.

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“청소년육성”을 각각 “청소년정책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4호 중 “청소년 육성”을 “청소년정책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

② 위원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교육청소년과
입 안 자	과장 직위 · 성명	교육청소년과장 박영숙
	팀장 직위 · 성명	청소년정책팀장 이희연
	주무관 성명 · 전화	하나영 (6193-2267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1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<u>청소년육성위원회</u>와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장 <u>청소년육성위원회</u> 제3조(설치) <u>청소년육성</u>에 관한 주요 시책의 심의·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<u>청소년육성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자문 한다. 1. <u>청소년육성</u>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. <u>청소년육성</u>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 3. ~ 5. (생략)	<u>용인시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 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. 제2장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 제3조(설치) <u>청소년정책</u>에 ----- ----- <u>청소년정책위원회</u>----- -----. 제4조(기능) ----- -----. 1. <u>청소년정책</u> ----- ----- 2. <u>청소년정책</u> ----- ----- 3. ~ 5. (현행과 같음)
현행	개정안

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~ 3. (생 략) 4. <u>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사람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	제5조(구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청소년정책</u> ----- ----- 5. <u>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</u> <u>② 위원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
---	---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청소년 기본법

제11조(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)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**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**를 둔다.

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1조(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소속으로 **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**를 둔다. 다만,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26. 4. 28.>

② **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.** <신설 2026. 4. 28.>

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·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26. 4. 28.>

[전문개정 2014. 3. 24.]

[제목개정 2026. 4. 28.]

[시행일: 2026. 10. 29.]

공 고

- 1.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-18번지 일원의 남이도시관리계획(공공청사 2호 지방소방학교) 결정(변경)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용인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·공고하고,
- 2. 같은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·공고하오니,
- 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,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열람·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8. 28.
용 인 시 장

▣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내용

-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및 사유서
- 가.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2	공공청사	지방 소방학교	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-18번지 일원	234,448	증) 3,306	237,794	‘03.06.23. (용고 제155호)	

- 나.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	공공청사	· 면적변경 - 234,448㎡ → 237,794㎡ [증] 3,306㎡	· 소방차량 차고지 확보를 위한 구역계 확장

■ 실시계획 작성 내용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-18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┌ 종 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

└ 명 칭 : 용인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개설공사

다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┌ 주 소 : 경기도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천덕산로11번길 42

└ 성 명 : 경기도지사(경기도소방학교장)

라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┌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

└ 준공예정일 : 2027. 6. 30.

마. 사업 규모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결정	2	공공청사	지방소방 학교	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-18번지 일원	237,794	'03.06.23. (용고제156호)	
시행	2	공공청사	지방소방 학교	처인구 남사읍 봉명리 647-18번지 일원	237,794	-	
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· 지번 ·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· 권리자의 성명 · 주소 : “따로 붙임”

사.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: “해당 없음”

■ 열람기간 : 시보 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(2026. 8. 28. ~ 2026. 9. 11.)

■ 열람장소 : 용인시청 도시정비과 ☎ 031-6193-3291

■ 열람사항 : 실시계획 작성 사항 및 관계도서

■ 의견제출 방법

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.

가.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

나. 주소, 성명, 전화번호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

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번호	소재지	지번		지목	지적면적 (㎡)		편입면적 (㎡)	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			비고
		기정	변경		기정	변경	기정	변경	성명	주소	성명	주소	권리 관계	
1	봉명리	635-3	635-3	대	435	435	435	435	공유지(경기도)					
2	봉명리	635-4	635-4	대	710	710	710	710	공유지(경기도)					
3	봉명리	637-1	637-1	대	1,867	1,867	1,867	1,867	공유지(경기도)					
4	봉명리	637-2	637-2	대	453	453	453	453	공유지(경기도)					
5	봉명리	642-9	642-9	임	2,442	2,442	2,442	2,442	공유지(경기도)					
6	봉명리	646	646	유	667	667	667	667	공유지(경기도)					
7	봉명리	646-1	646-1	도	2,130	2,130	2,130	2,130	공유지(경기도)					
8	봉명리	646-2	646-2	대	132,054	132,054	132,054	132,054	공유지(경기도)					
9	봉명리	646-3	646-3	대	525	525	525	525	공유지(경기도)					
10	봉명리	646-4	646-4	대	2,800	2,800	2,800	2,800	공유지(경기도)					
11	봉명리	647-1	647-1	답	3,286	3,286	3,286	3,286	공유지(경기도)					
12	봉명리	647-2	647-2	잡	1,761	1,761	1,761	1,761	공유지(경기도)					
13	봉명리	647-3	647-3	답	192	192	192	192	공유지(경기도)					
14	봉명리	647-4	647-4	답	520	520	520	520	공유지(경기도)					
15	봉명리	647-5	647-5	답	902	902	902	902	공유지(경기도)					
16	봉명리	647-6	647-6	전	876	876	876	876	공유지(경기도)					
17	봉명리	647-9	647-9	답	883	883	883	883	공유지(경기도)					
18	봉명리	647-14	647-14	도	3,745	3,745	3,745	3,745	공유지(경기도)					
19	봉명리	635-6	635-6	대	2,301	2,301	2,301	2,301	공유지(경기도)					
20	봉명리	647-18	647-18	임	27,929	27,929	27,929	27,929	공유지(경기도)					
21	봉명리	647-20	647-20	임	150	150	150	150	공유지(경기도)					
22	봉명리	647-19	647-19	임	37,938	37,938	37,938	37,938	공유지(경기도)					
23	봉명리	635-5	635-5	대	391	391	391	391	공유지(경기도)					
24	봉명리	635-7	635-7	임	6,488	6,488	6,488	6,488	공유지(경기도)					
25	봉명리	-	산 94-3	임	-	3,306	-	3,306	공유지(경기도)					
26	통삼리	142-1	142-1	대	3,043	3,043	3,043	3,043	공유지(경기도)					
합 계		26필지			234, 488	237, 794	234, 488	237, 794						

용인시 공고 제2026-2492호

공 고

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-5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(대학교1호 단국대학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공사완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8.
용 인 시 장

□ 공사완료 내용

- 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-5번지 일원
- 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ㄱ 종 류 : 용인도시계획시설(대학교) 사업
 - ㄴ 명 칭 : 용인도시계획시설(대학교1호 단국대학교) 내부 연결도로 개설공사
- 다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ㄱ 성 명 : 학교법인 단국대학 이사장 장호성
 - ㄴ 주 소 :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(죽전동)
- 라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 - ㄱ 착수예정일 : 2025.11.13.
 - ㄴ 준공예정일 : 2026.12.31.
- 마. 사업의 규모

구분	도면 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최초 결정일	비고
결정	1	단국대학교	대학교	수지구 죽전동, 기흥구 보정동, 마북동 일원	987,928.8	'03.01.22. (경고2003-4)	
시행	1	단국대학교	대학교	기흥구 마북동 1-5번지 일원	4,509.8	-	내부 도로개설 접속부 차로확장

용인시 공고 제2026-2501호

공 고

우리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, 이동읍 시미리, 덕성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“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”을 반영하여 진행 중인 소하천(화곡천, 안악골천, 시미곡천) 지정 변경·폐지(안)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,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8.

용 인 시 장

1. 소하천 지정 변경·폐지 계획

가. 위 치 :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창리, 이동읍 시미리, 덕성리 일원

나. 변경 내용

- 화 곡 천 : 소하천 연장 조정(4.27km → 0.95km)
- 안악골천 : 소하천 폐지(1.88km → 0.00km)
- 시미곡천 : 소하천 폐지(1.35km → 0.00km)

2. 열람 사항

가. 열람기간 : 2026. 8. 28. ~ 2026. 9. 11. (14일간)

나. 열람장소 : 용인시 생태하천과

다. 열람자료 : 상기 소하천 지정 변경·폐지(안) 관계도서

3. 주민의견 제출

- 제 출 처 : 상기 열람장소
- 제출방법 : 서면 제출
- 제출기간 : 공람기간 내

* 기타 사항은 용인시 생태하천과(☎ 031-6193-24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용인시 처인구 공고 제2026-1001호

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

식품 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(말소)한 업소에 대하여 「식품위생법」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27.

처 인 구



1. 예정된 처분의 제목: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
2. 대상업소

업종명	업소명	영업자	업소 소재지	처분사유	직권말소 예정일
휴게음식점	세븐일레븐 용인모곡중앙점	유** 외 1명	처인구 모곡읍 포곡로246번길 13, 1층	사업자등록 폐업 (2026.6.30.)	2026. 9. 18.(금)
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: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·말소

4.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: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
5. 법적근거: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

6. 공고기간: 2026. 8. 27. ~ 2026. 9. 17.(21일간)

7. 공고장소: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처인구청 게시판

8. 의견제출

- 부서명: 처인구 환경위생과(위생지도팀)
- 주 소: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(김량장동)
- 의견제출 기한: 2026. 9. 17.(목)까지

9. 고지사항

-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.
-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청인 처인구청장이나 재결청인 경기도지사에게 하여야 하며,



행정소송의 제기는 수원지방법원에 하여야 합니다.

- 이 처분에 불복이 있을 시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처분 등 이 있는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이 경과하면(행정소송은 1년이 경과하면)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10. 문의사항: 용인시 처인구청 환경위생과(위생지도팀) 031-6193-5302

[붙임] 의견제출서